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 서 포 면 장



### 1. 대상자

대상자		세대주 성명	발급기간	공고사유
성명	생년월일			
공*국	2006.08.10.	이*희	2023.09.01.~2024.08.31	폐문부재

2. 신청장소 : 서포면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3.08.28. ~ 2023.09.12.(15일간)

### 5. 발급안내

#### 가. 본인확인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 주민등록지 관할 이장의 확인

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3.5cmx4.5cm)1매.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발급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